

이 안내서는 형사 사법제도 및 범죄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범죄 피해자가 되면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때로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경우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범죄 피해자는 형사 사법절차의 각 단계에서는 물론, 그 후에도 범죄로 인한 실제적, 정신적 상처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안내서 끝 부분에 있는 '주요 문의처' 및 '용어설명'을 참조한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

범죄 피해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서비스, 본인 관련 법정 사건의 진행 과정, 그리고 법정에 가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에 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또한 범죄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법정에서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어린이나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족 그룹 회의에 참석해 범죄자 처벌에 관한 본인의 의향을 말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대리인은 이름 비공개, 보석, 가택 연금이나 가석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법원직원, 경찰, 사건과 관련된 타인으로부터 예의를 갖춘 성의있고 정중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도 가지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와 대우에 관한 추가 정보는 피해자 현장(Victims Code)을 참조한다. 본 웹사이트(victiminfo.govt.nz)에는 이러한 정보 외에 기타 유용한 정보도 들어 있다.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서비스가 수준 이하라고 생각되면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 www.victiminfo.govt.nz을 방문하거나 피해자 정보 라인(0800 650 654)으로 전화한다.

범죄 신고

우급한 때에는 111로 경찰을 불러 신고한다.

우급한 상황이 아니면 인근 경찰서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고한다. 지원인과 함께 가거나 피해자 지원단체 (Victim Support 0800 842 846)에 전화해 함께 갈 사람을 부탁해도 된다.

경찰은 신고인의 진술 내용을 서면화 한다. 경찰은 그 후 피해자에게 파일 참조번호가 있는 편지나 민원 접수 양식을 보내 준다. 이 양식과 참조번호를 잘 보관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알고 싶을 때나 보험금 청구 등 다른 경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한 피해자 지원단체나 다른 특별 지원기관에 연락해 피해자가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경찰의 주된 관심은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및 친척의 안전이다. 경찰은 신고된 범죄 유형에 따라 사건을 각각 달리 처리하며, 이에 관해서는 사건 담당 경찰관이 더 설명해 줄 수 있다. 우려되는 것이 있으면 경찰관에게 이야기 하면 된다.

피해자 정보라인(0800 650 654)으로 전화하면 추가 자료나 개인 지원을 해 주는 지역 기관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사건 수사

경찰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해당 범죄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한다.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만한 증거 사진을 찍거나 증거물도 수집한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용의자를 체포한 후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한다.

보석

용의자가 체포된 경우 그 사람은 법정에 출두할 때까지 석방될 수 있다. 이것을 보석이라 부른다. 때때로 그 사람의 거주지에 관한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통행금지 조건이 부여될 수도 있다. 용의자가 피해자나 지역사회에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경찰은 용의자가 법정에 출두할 때까지 그를 구금할 수 있고, 용의자는 법정 출두 시에 다시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중범죄(안내서 끝부분의 '용어설명' 참조) 피해자일 경우에는 용의자를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통지 등록부(victim notification register)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좀더 알아보기 원하면 victiminfo.govt.nz에서 다른 안내서들을 참조한다.

피해자 영향 진술서

피해자 영향 진술서(victim impact statement)를 작성하기 원하는지 피해자에게 질문을 한다. 이는 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법원에 이야기하는 진술서다. 사건 담당 경찰관, 피해자 지원단체 혹은 다른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안내서의 '판결 및 선고' 항목에 피해자 영향 진술서에 관한 추가 설명이 있다.

수사를 아무리 철저히 하더라도 체포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용의자를 기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불신한다는 뜻은 아니다.

피해자 지원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심리적인 도움이나 보험 청구 등에 관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피해자 지원단체(0800 842 846)에 문의한다. 또는 피해자 정보 라인(0800 650 654)으로 전화하여 가까운 곳에 다른 지원 기관이 있는지 알아본다.

사고보상공사(ACC)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CC 클레임 헬프라인(0800 101 996) 또는 민감 사건 헬프라인(0800 735 566)(성폭력 관련일 경우)으로 전화해 문의한다.

청소년 범죄

17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 사건은 일반 사건과는 달리 청소년 사법 절차를 통해 처리된다. 범죄 피해자는 청소년 사법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가족 그룹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아동청소년가족복지부(CYF)나 법원으로 문의하면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청소년 사법 제도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가족복지부의 가족그룹회의 조정관이 범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다.

재정 지원

중범죄 피해자(안내서 끝부분의 '용어설명' 참조)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 재정 지원은 범죄의 피해를 극복하는데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각 지원금 신청에는 신청 자격과 최고 한도가 적용된다.
- 신청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관한 내용은 피해자 지원단체(0800 842 846)로 문의한다.

재정 지원에 관한 최근 정보를 보려면 victimsinfo.govt.nz을 참조하거나 피해자 지원단체로 문의한다.

법정 내에서

피고(범죄로 기소된 사람)는 법정에 몇 차례 출두해야 할 경우가 흔하다. 유죄 시인(guilty)이나 무죄 주장(not guilty)을 하기 위한 법정, 판사가 사건의 증거를 심리하는 법정 등에 출두해야 한다. 피해자가 이러한 법정에 모두 참석해야 할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참석해도 된다.

피고가 유죄를 시인하면 당일에 선고를 하거나 선고 공판 일자를 확정한다.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면 이 사건을 추후 공판에 회부한다. 사건의 경중 및 취급 법원의 유형에 따라 경찰이나 국가가 임명한 검찰이 법정에서 논고를 하게 된다.

범죄는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찰은 정부를 대변하며, 국가, 경찰 및 국민을 대신하여 법정에서 논고를 하게 된다.

피해자는 피고의 범죄를 입증하려는 검찰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법정 증언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증인의 역할' 참조).

법원 사건의 처리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절차도 복잡할 수 있다. TV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 관련되는 사람도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도 사용될 수 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법원 피해자 자문관이나 담당 경찰관 또는 개인 지원인에게 문의하면 된다.

청각 장애, 기동 장애, 언어 장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법원 피해자 자문관이나 담당 경찰관 또는 개인 지원인에게 이야기하면 된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안전이 중요하다. 법정에서 신변 안전이 우려될 경우 언제라도 경찰관이나 법원 안전 담당관에게 이야기 하면 된다.

법원 피해자 자문관

피고가 법정에 처음 출두하면 법원 피해자 자문관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된다. 피해자 자문관은 피해자에게 사건의 진행 과정과 향후 피해자의 역할에 관해 설명해 준다. 심리적인 도움과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관해서도 설명해 준다. 피해자를 위한 법원 서비스(Court services for victims) 안내서를 보면 이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무엇이든 확실치 않은 것이 있으면 법원 피해자 자문관, 담당 경찰관 또는 지원인에게 문의하면 설명해 준다.

법원 피해자 자문관과 통화하려면 법원으로 직접 전화하거나, 피해자 정보라인 0800 650 654을 이용하면 된다.

증인의 역할

증인은 법정 사건 심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증인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이 열리기 전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두해야 할 경우, 담당 경찰관이나 법원 피해자 자문관이 언제, 어느 법정에 출두하라고 피해자에게 말해 준다. 공식적인 증인 출두 요청서도 집으로 배달된다.

검찰이나 담당 경찰관이 증인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피해자에게 설명을 한다. 증언할 법정에 미리 들어가 보도록 안내를 부탁할 수 있다. 법원 피해자 자문관, 담당 경찰관 또는 지원인에게 이의 주선을 요청하면 된다.

그 외에도 법원 피해자 자문관이나 담당 경찰관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부탁할 수 있다:

- 법원 청사 내외에서 안내할 사람과 만나는 일의 주선
- 피해자가 증언을 할 때 지원인이 함께 앉아 있도록 주선
- 증언할 때 피고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스크린으로 막거나 폐쇄회로 TV 이용의 주선(일부 경우에만 해당).

대부분의 법원에는 증인을 위한 별도의 대기실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의 가족 및 친구들을 법원 청사 내외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법정 내에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면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으며, 범죄에 관해 아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는다.

증언을 할 때 피해자는 보통 피고를 직접 보게 된다.

증언하는 당일은 물론 그 전에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에 관해 법원 피해자 자문관이나 지원인에게 문의하면 된다.

판결 및 선고

재판 끝에 배심원(배심원 공판의 경우) 또는 판사(배심원이 없는 경우)는 피고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한다. 배심원들의 의견이 나뉘어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또 한번의 공판이 있을 수 있다.

무죄로 인정되면 피고는 무죄 선고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된다. 이와 같은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법원 피해자 자문관이나 지원인과 이야기를 나누면 된다.

피고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당일 선고를 하거나 선고 공판 일자를 확정한다.

회복적 사법

회복적 사법 회의(restorative justice conference)란 피해자, 범죄자, 지원인 및 지역사회 대표나 통역사 등 다른 인정된 사람이 참석하는 비공식으로 주선되는 회의이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피해 복구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의견을 말하고, 범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제도이다.

사건을 회복적 사법 절차에 회부하려면 먼저 용의자가 유죄를 시인하거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어야 하고, 범죄자와 피해자가 모두 참석하기로 동의해야 한다.

회복적 사법에 관해 더 알기 원하면 법원 피해자 자문관에게 문의하거나 justice.govt.nz/restorative-justice을 참조한다.

선고

판사가 범죄자에 대한 선고를 할 때는 유사 범죄에 관한 이전의 판례, 범죄자에 관한 보고서 등 여러 가지를 참조하도록 법에서 요구한다.

판사가 동의하면 피해자(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사람)가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영향 진술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낭독할 수 있다. 법원 피해자 자문관이나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대신해 판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판사가 범죄자에 대한 선고를 할 때는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 보상금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부상을 당했거나 재산 망실이나 손상을 입은 경우, 판사는 때때로 피해자 앞으로 금전(이를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불하도록 범죄자에게 명령한다. 피해자 보상금을 수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주선하려면 법원 (0800 909 909)으로 전화하면 된다.

항소

검찰과 범죄자는 둘 다 판결 및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를 할 수 있다. 이는 상급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검찰은 향후 절차에 관해 피해자에게 알려 준다.

재판 후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자는 징역, 지역사회봉사, 벌금 등 다양한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출옥

범죄자는 일정 복역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 되거나 형 만기에 출옥된다. 출옥은 피해자가 예상한 것 보다 조기일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되고 선고를 받는 동안 감금되어 있던 기간도 복역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형 만기가 되면 범죄자는 반드시 출옥되어야 한다. 복역 기간이 끝난 후 범죄자를 옥에 감금해 둘 수 없다.

복역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석방이 허락되면 범죄자는 출옥될 수 있다. 뉴질랜드 가석방 위원회는 대부분의 범죄자 사건을 심리하고 범죄자의 조기 석방이 지역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가석방으로 출옥되는 범죄자는 흔히 출옥 후 최소 6개월 동안 지켜야 할 특정 조건을 부여 받는다. 이 조건은 가석방 위원회 또는 해당 범죄자에게 선고를 한 판사가 결정한다. 조건에는 피해자의 거주장소, 접촉자, 통행금지 시간 및 지역사회 보호에 도움이 될만한 다른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피해자는 가석방 위원회의 가석방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해자가 범죄자의 조기 출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피해자 통지 등록부에 인적사항을 등록해 가석방 위원회 청문회가 소집될 때마다 본인에게 연락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록부에 기재된 피해자 인적사항을 정정하려면 경찰, 교정부 또는 지원기관에 연락하면 된다.

가석방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에는 서면, 화상통화 또는 청문회 직접 참석이 있다.

• 서면이나 화상통화

가석방 위원회 담당관과 통화한다.

• 직접 참석

가석방 위원들과 직접 만난다. 향후 범죄자를 보게 될 가석방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발표하지만 이 청문회는 형무소에서 개최되지 않고 범죄자도 참석하지 않는다. 이 청문회에는 지원인과 함께 참석할 수 있다.

주요 문의처

형사 사법절차의 어떤 단계에 있는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범죄 피해자 본인 및 다른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의 연락처가 있다. 서비스에 관한 추가 정보는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피해자 정보 라인 (0800 650 654)을 이용해 문의하거나 victimsinfo.govt.nz을 참조한다.

ACC

acc.co.nz

0800 101 996 클레임 헬프라인

0800 735 566 민감 사안 헬프라인(성폭력 피해자용)

법원 피해자 자문관

0800 650 654(피해자 정보라인)

교정부

04 460 3000

corrections.govt.nz

뉴질랜드 가석방 위원회

0800 PAROLE (727 653)

paroleboard.govt.nz

개인 지원 기관

victimsinfo.govt.nz을 참조하거나, 전화번호부의 개인 지원 서비스(personal help service) 난 참조

경찰

police.govt.nz에서 인근 경찰서를 찾거나, 전화번호부 맨 앞쪽 청색페이지 참조

피해자 지원단체

0800 VICTIM (842 846) 1일 24시간 운영

victimsupport.org.nz

여성 피난소

0800 REFUGE (733 843) 1일 24시간 운영

womensrefuge.org.nz

랭귀지 라인 통역 서비스

0800 656 656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2시

용어 설명

보석(Bail)

경찰이 향후 법정 출두 조건으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석방하는 행위.

법원 피해자 자문관(Court victim advisor)

피해자에게 법원 절차 및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는 법무부 공무원.

피고(Defendant)

범죄로 기소된 사람.

살인(Homicide)

어떤 사람이 타인을 살해하는 행위.

범죄자(Offender)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피고'라 부른다.)

가석방(Parole)

범죄자가 출옥을 허락 받아 지역사회에서 남은 복역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일정 조건이 부여된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피해 복구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의견을 말하고, 범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주선되는 모임을 회복적 사법 회의라 부른다.

중범죄(Serious crime)

- 성폭력이나 기타 강력 폭행죄.
- 중상이나 사망을 초래한 범죄.
- 피해자 본인 및 직계 가족 중 어느 누구의 신변 안전에 위험이 커 지속적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범죄.

피해자 통지 등록부(Victim Notification Register)

형사 사법 기관에서 사용하는 비밀 목록으로 이를 이용해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해당 사건의 사법절차 진행 정도, 범죄자의 일시적인 출옥, 범죄자의 가석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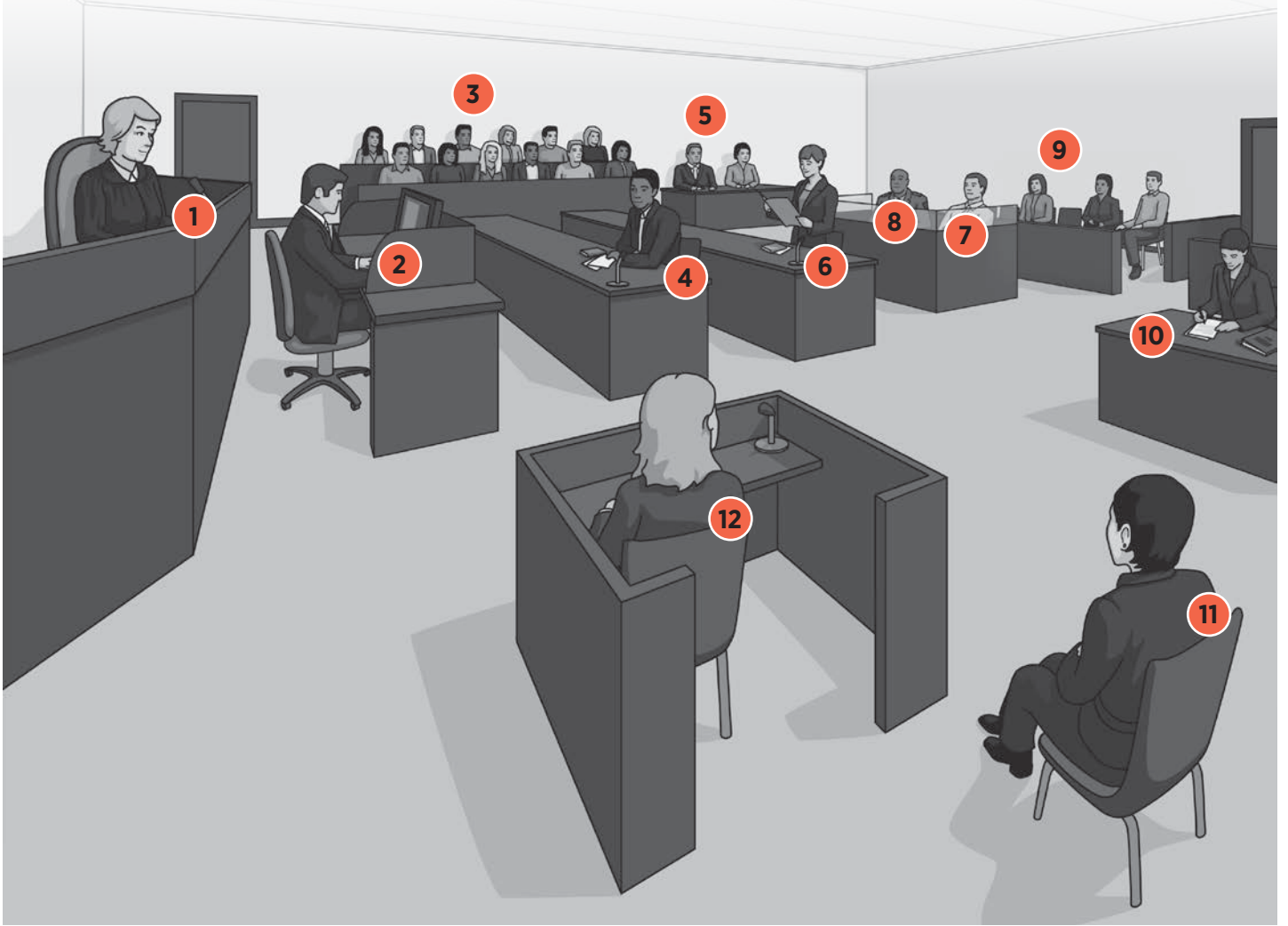
담당 경찰관에게 의뢰하여 피해자 인적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피해자 영향 진술서(Victim impact statement)

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진술서이다.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지만 사진, 도면, 시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판사는 범죄자 선고 시에 이 진술서를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는 법정에서 선고 전에 이 진술서를 낭독할 수 있다.

법정 내부

이 도형은 법정 배치의 한 예이며,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나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1. **판사**는 재판을 주관한다. 피고의 유죄 여부를 결정한다. 배심원이 있는 재판의 경우에는 배심원이 유죄 여부를 결정한다.
2. **법원 서기**는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필요한 사무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3. **배심원**은 12명으로 구성되며 피고의 유죄 여부를 결정한다.
4. **검찰**은 국가를 대신해 피고를 상대로 하여 논고를 한다.
5. **언론**은 사건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이다.
6. **피고 변호사**는 피고를 대변하는 변호사이다.
7. **피고**는 범죄로 인해 기소를 당한 사람이다.
8. **피고 호송인**은 피고를 법원까지 호송하는 사람이다.
9. **방청석**은 일반 대중, 피해자 가족 및 친척이 앉는 좌석이다.证인이 증언을 마치고 돌아가 앉는 곳이기도 하다.
10. **법원 피해자 자문관**은证인이 법원 절차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들이 법정에서 항상 배석하지는 않는다.
11. **증인 지원인**은证인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 동행하는 사람으로 판사가 동의해야 참석할 수 있다.
12. **증인**은 사건 및 범죄에 관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다.